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변종오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의 장소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 등을 규정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 제4조)

다. 영업신고 표시 (안 제5조)

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안 제6조)

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 5.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최근 소규모 창업 및 이동형 상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관련 영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러나 충청북도 내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한 영업장소 지정 기준, 관리 방안, 공정한 배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행정 혼선이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 실태와 수요에 맞춰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나.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상위법의 취지와 부합하며, 상위법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자치입법이 가능한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 관계기관 협조, 영업장소 지정 절차 및 관리 등 충청북도 관할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율 가능한 조례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 권한에 부합하며 법적 타당성이 확보됨.
-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는 영업자의 영업신고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는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8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등 협조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

○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5. 4. 15. ~ '25. 4. 2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용어 정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사후관리, 인센티브 등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서술됨.
- 특히, 제4조(영업장소 지정 대상)와 제5조(지정기준)는 향후 영업장소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민원 예방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음식판매자동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지역 상권과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